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

- 에이온코리아보험중개주식회사 -

2021.09.17.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4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제6조(이사회)

제7조(대표이사)

제8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제11조(임직원)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2조(회사 및 임직원의 책무)

제13조(금융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및 민원 정책과 관리)

제14조(금융상품 광고 기준)

제15조(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16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제17조(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제18조(업무위탁 및 관련 수수료 지급)

제19조(세부지침의 위임)

제5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 제20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조치 및 평가
  - 제21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 제22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조치)
- 제7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 제23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제24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부 칙 (2021.09.17)

제1조(시행일)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에이온코리아보험중개주식회사-

2021.09.17. 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는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에이온코리아보험중개주식회사 (이하 “회사”) 및 회사 소속의 임직원·보험설계사 등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상법, 동법 시행령,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험설계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임직원 등”이란 해당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및 소속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4. “관련법규”라 함은 상법, 동법 시행령,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감독업무시행세칙 포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5.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6.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7. “업무지침”이란 보험중개사의 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과 표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말한다.
  8. “금융소비자”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보험중개사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상품에 관한 광고”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말한다.
  10. “업무에 관한 광고”란 보험중개사가 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유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제4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할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 제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 제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등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7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임직원 등의 이 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준법감시인(부서)” 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4.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그 밖에 이 기준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

####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를 준법감시인(부서장)으로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



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적극 제공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표창·연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본 기준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임직원)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조직·업무를 관리하는 임직원은 소관조직·업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총괄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제12조(회사 및 임직원의 책무)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 제13조(금융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및 민원 정책과 관리)

-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회사가 금융상품의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금융상품 광고 기준)

- ①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 ③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 ④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에이온그룹이 제정 운영하는 국제적인 수준(Global Standard)의 각종 지침을 반영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법규 준수, 내부통제기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및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 제17조(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8조(업무위탁 및 관련 수수료 지급)

- ① 회사는 어느 하나 또는 특정 보험자만을 위하여 보험계약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법인 보험중개사로서, 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청약 또는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회사가 보험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독립 법인 보험중개사로서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 ③ 회사는 보험자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회사가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한 중개업자의 명의로 위탁업무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상품판매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 또는 에이온 그룹의 국제적인 수준(Global Standard)의 각종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한 업무지침에 따른다.

## 제5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 제20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이 금융상품의 위험도 및 복잡성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교육과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의 상품교육은 기업보험고객을 상대로 한 개별 맞춤형 상품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상품원리 교육을 위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임직원의 판매자격 보유 및 그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관련 법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조치 및 평가

### 제21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조치)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시 이를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 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 제23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① 회사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기업보험 고객을 주대상으로 하나, 고령의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는 금융상

품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4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① 회사는 기업보험 고객을 주대상으로 하나,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① 관련 법령 제·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이 기준의 제정·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기준의 제정·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이사회를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 ④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변경한 경우 제정·변경 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2021.09.1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